



제419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에 대한 보고 등을 위한 학교의 자료 제출 근거 신설〉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28호)

2024. 1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지도·감독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감사와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은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5조(지도· <u>감독</u>) ①·② (생략) <u><신설></u>	제5조(지도· <u>감독 등</u>)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u>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¹⁾는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교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²⁾.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자료의 요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행 「고등교육법」 제5조는 교육부장관이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조항을 「고등교육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국회가 감사와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³⁾,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의 국회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조항을 「고등교육법」에 마련하려는 바,

국가의 원활한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의 정부 정책 감사 및 제도개선 요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학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음.

< 현행 제5조2항과 개정안 자료요구 규정 비교 >

구분	현행 제5조제2항	개정안 제5조제3항
요구권자	○ 교육부장관	○ 교육부장관
목적	○ 학교를 지도·감독 ○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시행령 제18조)	○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출의무	-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전략)…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총장 보수 지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4년제 일반대 71개교, 전문대 100개교이며, ○○대·○○대·○○대·○○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대, ○○대는 총장 보수 공개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후략)…(윤영덕의원, 2021 교육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21.09.27.)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의 자료제출을 최대한 기피하거나 축소 제출하려는 경향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바⁴⁾, 동 개정안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교육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 「국회법」 제128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회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현행 「고등교육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를 통해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 등은 ① 교육부장관은 현행 「고등교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②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5조의 지도·감독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며, ③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56)⁵⁾」을 비롯하여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 축소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국회 자료제출 요구의 주요 쟁점과 과제, 2022.12.28.,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5) 2024년 10월 3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중임.

＜ 개정안에 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의견 현황 ＞

기관명	주요의견
동의대 연세대 홍익대 경북대	현행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는 이미 교육부 장관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해당조항 불필요
홍익대	① ‘국회가 감사와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법령 제안사유는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며 고등교육법 제5조 지도·감독 한계를 벗어남 ② 교육부의 지도·감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행사가능
대교협 전문대교협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최근 발의된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 축소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 필요

자료 : 교육부

문 의 처
02)6788-5188